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67

발의연월일: 2024. 11. 7.

발 의 자:임이자·송언석·김성원

최수진 • 박덕흠 • 이상휘

배준영 • 우재준 • 김태호

김위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숙련기술전수자라는 용어는 산업 일반 종사자의 단순 기술 전수와 구분이 어려워 중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련기술전수자를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또한 대한민국 명장은 국가가 인정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인이고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는 세계 최고의 기술인임. 이들을 선양하고 발 전시키는 것이 국가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임. 이들은 오랜 기간 축적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서 품질 향상과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숙련된 기술인들 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숙련기술장려금 지급은 매우 중요함.

숙련기술장려금은 명장들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들이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기술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제공하여,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이들은 또한 사회적 귀감이자 롤모델로서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들이 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최고의 숙련기술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더 많은 인재들이 기술 직종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특히,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는 세계 80여개국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였으며, 다른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 올림픽 입상자들에게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속적인 대한민국 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배출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 촉진, 이공계 진출을 장려하는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기술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전반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뛰어난 숙련기술인을 우대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을 숙련기술장려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법률 제 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련기술장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중 "숙련기술전수자"를 각각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4항 중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각각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계속종사장려금"을 "숙련기술장려금"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계속 종사"를 "숙련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장려금을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속종사장려금"을 "숙련기술장려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 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었 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부터 적용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숙련기술전수자"를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u>숙련기술전수자</u> 의 선정 및	제13조(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	
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	
려는 사람을 <u>숙련기술전수자</u> 로	<u>대한민국숙련기술</u>
선정할 수 있다.	<u>전승자</u>
② 제1항에 따라 <u>숙련기술전수</u>	②대한민국숙련기
<u>자</u> 로 선정된 사람은 대통령령	<u>술전승자</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숙련기</u>	대한민
<u>술전수대상자</u> 를 고용노동부장	<u>국숙련기술전승대상자</u>
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고용	
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숙련기	
술전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	
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u>숙련기술</u>	③대한민국
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	<u>숙련기술전승자</u> 및 <u>대한민국숙</u>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련기술전승대상자
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	<u>숙련기술장려금</u>
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 급받고 있는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 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지원금 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숙련 종사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 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 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 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 사를 통한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계속종사장려 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 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 관은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 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숙련기술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 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